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 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나. 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을 “녹색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을 “한다)에서 5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수행체계 수립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의 보유
3. 인증업무 처리규정 수립
4.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 보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

여야 한다)별 1명”을 “5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을 “2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을 “4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으로 한다.

3.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9조제1항 전단 중 “발급”을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축주 등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평가 중 현장실사”를 “심사 중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으로, “재

심사”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은 규칙 제9조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후 180일 이내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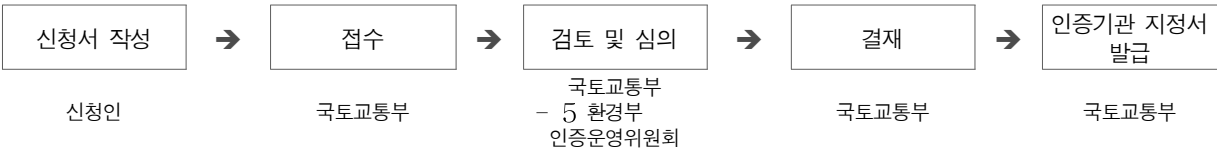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건축주	:	인증기관	:
준공(예정)일	:	유효기간	: . . . 까지
주소	:		
층수	:		
연면적	:		
건축물 용도	:		
설계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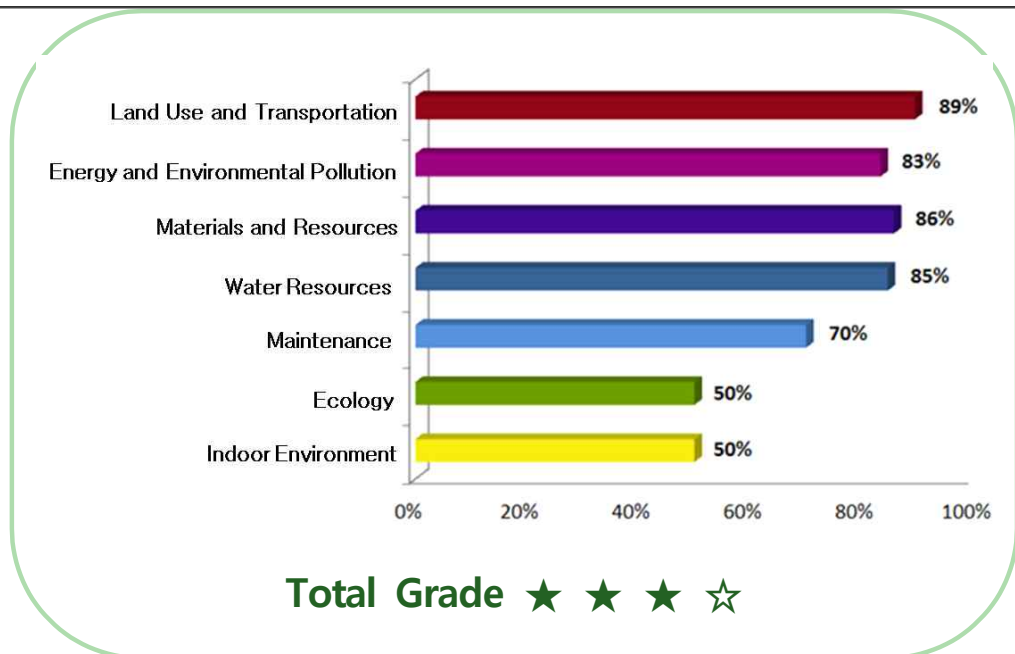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G-SEED Certification

Building Project Overview		Certification Overview	
Building Title	:	Certificate Number	:
Owned By	:	Certified by	:
Completion Date (Expected)	:	Expiration of	: Until
Address	:	Certification	(Day/Month/Year)
Number of Floors	:	Certification Grade	
Gross Area	:	Grade	:
Usage	:	Criteria	:
Designed by	:		
Builder	:		
Supervisor	:		

This building is certified as G-SEED (Grade) according to the article16 under 「Green Building Act」 and the article9 clause1 under 「Rules on Green Building」 .



. . . (Day/Month/Year)

Representative of Certificate Organization Sign

Verified by



KIC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Operat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건축주	:	인증기관	:
준공(예정)일	:	유효기간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소	:		
층수	:		
연면적	:		
건축물 용도	:		
설계자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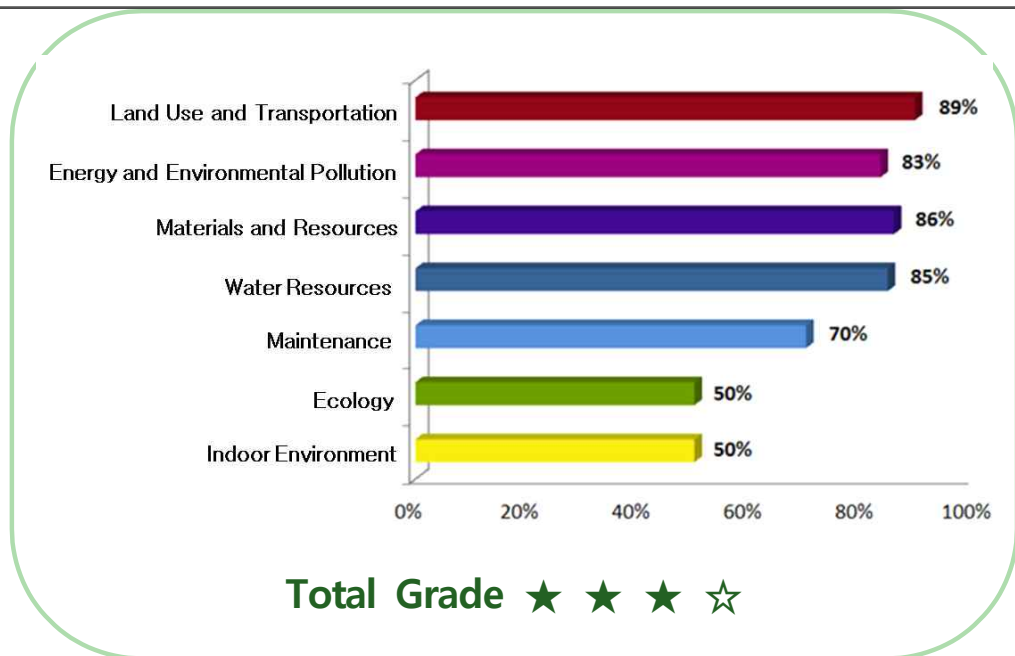
인증기관의 장		년 월 일
		직인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G-SEED Preliminary Certification

Building Project Overview		Certification Overview	
Building Title	:	Certificate Number	:
Owned By	:	Certified by	:
Completion Date (Expected)	:	Expiration of	:
Address	:	Certification	:
Number of Floors	:		:
Gross Area	:		:
Usage	:		:
Designed by	:		:

This building is preliminary certified as G-SEED (Grade) according to the article16 under 「Green Building Act」 and the article11 clause3 under 「Rules on Green Building」 .



(Day/Month/Year)

Representative of Certificate Organization

Sign

Verified by  KIC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Operat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생략) <u><신 설></u>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u>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수행체계 수립</u> <u>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의 보유</u> <u>3. 인증업무 처리규정 수립</u> <u>4.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 보유</u>
<u>②</u>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u> <u>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u>	<u>③</u>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녹색건축</u> ----- -----

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생략)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 6. (생략)

⑤·⑥ (생략)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한
다)에서 5명(해당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

--.

1. ~ 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

1. · 2. (생략)

③ ~ ⑥ (생략)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③ -----

5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

2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④ -----

----- 4명(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인증관리 시스템에 등록-----.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주 등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

<신 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
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
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
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
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
관-----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u>제7조제1항</u>에 따른 <u>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u>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생략) ② <u>제10조제1항</u>(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u>재심사</u>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④ (생략)	----- . ---- <u>제7조제1항 및 제2항</u>--- <u>심사 중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u>--.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u> ----- ----- <u>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u>----- ----- ----- -----. ③·④ (현행과 같음)
--	---